



외국인근로자도 소중한 근로자니까요!

[외국인근로자 근로여건 개선방안]



**코로나19로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에
근무한 외국인근로자 A씨,
그 동안 아파도 건강보험 가입이 안돼
병원에도 가지 못했습니다.**

산재로 다쳤지만
일하는 사업장을
함부로 바꾸지 못해요

우리 회사는 건강보험
가입이 안돼요 ㅜㅜ

한겨울에 비닐하우스에서
사는게 너무 힘들어요.



앞으로는 A씨와 같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가 없도록 근로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.

- ☒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
- ☒ 사업장 변경 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
없는 사유 확대
- ☒ 주거환경 개선 이행기간 부여





사업자등록이 없는 곳에서 일해
의료보험 가입이 어려운
외국인근로자를 위해

입국 즉시 건강보험 지역가입

BEFORE

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농축산·어업에 근로
하는 노동자는 입국 후 6개월 후에야
지역가입자로 가입



AFTER

- 농·어촌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후 즉시 지역
가입 가능
- 농어촌 지역 건강보험료 경감(22%) 대상에 포함
-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(28%) 통한
보험료 지원 추진



부당한 처우에도 사업장을
변경할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를 위해

사업장 변경 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 없는 사유 확대

※ 법제·규제심사(~3월 1주) → 행정예고(3월 중) → 고시 개정 및 공포(3월 말)

책임이 없는 사유에 새로 포함되는 사항

- 숙소용도가 아닌 불법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한 경우
- 농한기 및 금어기에 권고되사당한 경우
- 사용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
 - ① 사업장에 중대재해 발생
 - ② 외국인근로자가 3개월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신체적 정신적 부상 또는 질병이 생긴 경우
- 임금을 체불한 경우(월 임금 30% 이상 금액 2회 이상, 10% 이상 4회 이상)
-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및 사회보험에 미가입한 경우
- 사용자 외에 직장동료, 사업주 배우자(동거인)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한 경우



비닐하우스 등 불법 건축물에서
생활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를 위해

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이행기간 부여

이행기간은?

- **기간:** 6개월
- **조건:** ① 사업주: 숙소 개선계획서제출
② 외국인근로자: 기존 숙소 이용 및 재고용동의

이행되지 않았을 때는?

- **사업주:** 6개월
- **외국인근로자:** 사업장 변경 허용

**외국인근로자도
함께 일하는 구성원입니다.**

**근로자와 사업주 모두
상생하는 개선방안이 되도록
추진해나가겠습니다.**

